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221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18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8년도 귀속 재산세(토지분, 도시지역분) 627,510원 중 332,890원, 지방교육세 73,820원 중 37,740원을 초과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04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박성준

판사 추경준